

해외의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네트워크 및 시스템 현황

김일광*, 권혜원**, 최진호***

서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동덕여자대학교 체육학과***

Safety Management Network of Sports Facilities Abroad and System Status

Il-Gwang Kim*, Hei-Won Kwon**, Jin-Ho Choi***

Dept. of Leisure Sport, Seowon University*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Dept. of Physical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요 약 해외의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네트워크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각국의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과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국토안보부(DHS)를 필두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수호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감독하고 조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법·규정의 제도화, 스포츠시설 안전 가이드라인,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전문가 육성시스템 등 미국과 호주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주요위험시설(MRF)의 운영자들에게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사태 운영시스템(EMS)을 통해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위험 물질 등에 대한 계획과 협력을 다루고 있다.

주제어 : 스포츠시설, 스포츠시설 법·규정 제도화, 스포츠안전 행정체계, 스포츠안전전문가 육성시스템, 스포츠안전관리 매뉴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provide the information of mandatory regulation for Korean sports facilities and the preliminary data for building sport safety management manual through sports facilities abroad and system status. Furthermore, based on the information of sports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this research performed the benchmarking of each country sports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system. As a result, in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leads effort to achieve a safe, secure, and resilient homeland. In Germany, law & regulations, sports facilities safety guideline and expert extension have been reviewed. Germany is more realistic and practical than other countries. In Australia, Major Hazard Facilities(MHF) is responsible for eliminating the risk of a major incident. Emergency Management System(EMS) should spontaneously respond when the alarm is raised as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are vital to ensuring that a small incident does not escalate to become a major disaster.

Key Words : Sports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regulations, Sport safety administrative system, Sport safety expert extension, Sport safety management manual

* This work was done with the sports promotion fund from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KISS-2015-B02002)

Received 2 May 2016, Revised 2 June 2016

Accepted 20 June 2016, Published 28 June 2016

Corresponding Author: Jin-Ho Choi(Dongduk Women's University)

Email: gocjh98@dongduk.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국내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법규 실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끊임없는 분쟁, 기후의 변화로 인한 재난, 인재로 인한 사고 등의 위험성이 극에 달하면서 안전관리 문제가 스포츠 현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1]. 그 중에서도 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의 중요성은 이미 인식되어 왔지만 그에 따른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정책이나 매뉴얼이 우리나라 스포츠안전 현장에 맞게 정립되지는 못하였다.

스포츠안전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클럽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률이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으며, 지자체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여부를 감추는 위험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2]. 스포츠안전재단의 2013년 기준 3년간 사고를 검토해본 결과, 상해사고는 4,806건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내 사망 및 장애 등의 사건은 20여건으로 스포츠클럽 및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스포츠 관련 사고를 살펴보면, 시설적 부분과 함께 안전관리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 특히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과 더불어 안전 훈련 및 교육 정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야외 운동시설에 대한 제조 및 설치 부분에 있어서 안전기준의 마련 및 관리 감독도 필요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통합된 형태의 조건이 부족한 현실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4]에 따르면, 국내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2013년 기준, 19,398개소(138,294,000㎡)이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각 특정관리대상의 세부요건이 있으나 그 기준에 있어서 크기가 대형(바닥면적 5,000㎡ 이상, 관람석면적 1,000㎡이상인 운동장·체육관·운동경기 관람장)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에 대한 준비가 더욱 미흡한 현실인 것이다. 물론 그 이하의 면적이 있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바닥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인 운동시설 기준을 두고 있으며 점검은 기초자치단체의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즉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3], 재난관리 매뉴얼 및 체육시설별 특성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으므로 이를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현실이다.

[5]를 살펴보면 대부분 1인 체육시설물로의 인식이 부족하며 재난 대피 및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시설 미비 132건, 관리소홀·자체점검 부실 9건, 매뉴얼 및 지침 미비 146건, 안전수칙 미준수 10건, 교육 및 훈련 미흡 91건, 기타 14건으로 총 402건의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관리영역에서 총체적이며, 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배제하고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1955년 168명이 사망한 여객선 침몰사건 시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일본은 정부기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격기간을 중심에 두고 있는 반면에, 국내의 안전사고 매뉴얼 및 관리 네트워크상의 문제점, 사법처리 사항에서의 가벼운 처벌규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6]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비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법률에 제시한 안전관리는 체육시설물의 유지의 관점에서 규정화하고 있다. 즉, 안전한 체육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계획해야 하는가는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체육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유지·보수를 잘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소방법 등 타 법규와의 적용범위가 혼재되어있는 상황이다. 국내 스포츠산업분야에서 공공체육 관련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점검하여 적용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 해외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실태

미국, 호주 그리고 독일의 경우 스포츠안전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구축하고 있어 국민들을 안전에 기반하여 스포츠활동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공 단체들은 지방자치의 스타디움, 경기장, 레크리에이션 시설들과 같은 스포츠시설의 일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사설 관리 기관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상황은 정부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7]. 시설 관리와 운영 서비스를 위한 대표적인 민간기관은 SMG와 Global Spectrum 이 있다. SMG는 시설 경영과 마케팅 개발에 초점을 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설기관들 중에 하나이며 컨벤션 센터, 전시관, 문화회관, 스포츠경기장, 스타디움, 영화관, 특별이용 시설 등을 관리한다. 스포츠시설로서 13곳의 스타디움, 68곳의 경기장, 17곳의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SMG의 관리 하에 있다. Global Spectrum 또한 미국, 캐나다,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에 걸쳐있는 경기장, 컨벤션 센터, 스타디움, 아이스 시설, 박람회, 원형극장과 같은 다양한 대중장소를 위한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민영화를 결정한 시설을 위해 건축자문과 개구부 설계를 제공한다. Global Spectrum은 미국 내 36개 경기장, 8개 스타디움, 4개 아이스 시설을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국가 건축 법규(National Construction Code)가 호주 전역에 있는 새로운 건물의 설계와 건축에 있어서 안전, 건강, 편의시설, 지속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제공하고 있다[8]. NCC는 단일 코드로 모든 현장 건축 요구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게 개발한 호주 정부 의회의 계획이다. NCC는 호주 건축 법규(Building Code of Australia)와 호주 위생 공사 기준(Plumbing Code of Australia)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는 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BCA를 적용하고 있으며 BCA는 호주 정부와 주 영토 정부를 대표하는 호주 건축 법규 위원회(Australia Building Codes Board)에 의해 조정·유지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스포츠안전에 관한 담당은 주체육회의 스포츠시설부서에서 민간기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전문회사)을 위임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스포츠안전에 적용되는 규정은 3가지로 독일-유럽 공업 규격위원회(DIN/EN-Normen), 독일사고보험회사(GUV-Unfallkassen), 기계 및 제품안전법률(Geraete-und Produktsicherheitsgesets: CPSG)이다. 이 규정에 맞게 스포츠시설을 평가, 검사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독일연방 스포츠 기구,

게임기구 정비-안전 전문협회(Bundesfachgruppe Wartung-Sicherheit fuer Sport-und Spielgeraete e.V.:BFGW)이다. 또한 이 기관에서 스포츠시설 전문평가인(Sportstaetten-Sachverstaedige)을 양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자격증발부 및 정기적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연방 스포츠기구, 게임기구 정비-안전 전문협회(BFGW)의 회원은 약 11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은 주체육회와 시체육회의 업무를 위임받아 헤센 주, 바이에른 주, 바덴-뷔템부르크 주, 튀링엔 주, 라인란트 팔트 주, 브레멘 주 북부지역, 베스트팔렌 주 쾰른시 서부, 북부지역 등의 스포츠시설에 관한 안전점검, 평가, 정비 업무를 맡고 있다. 각 주의 기술검사협회(TUEV)에서도 평가 및 점검 업무를 증명해주고 있다. 헤센 주의 경우, 스포츠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민법과 사고공보험 회사의 규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ivil law and public insurance company's regulation on sports facilities' safety inspection of Hessen state, Germany

Inspection	Facility manager	Sports instructor	Private specialized agency
Observation inspection	Every week	Before use	Every year
Function inspection	Every month	Before use	Every year
Expert inspection	-	-	At least every two years

Civil law and public insurance company's regulation on sports facilities' safety inspection of Hessen state, Germany, <http://www.hss-sport.de/wartungen-und-inspektionen/>[9]

1.3 관련 선행연구

스포츠시설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1]의 『스포츠시설의 안전실태 및 대테러대책에 관한 연구』, [10]의 『국내 스포츠이벤트의 경호경비 및 안전시스템에 관한 연구』, [11]의 『학교 내 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체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12]의 『어린이 놀이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연구』 등이 있는데 이 외에 한국의 실정에 맞는 스포츠시설법률 마련이나 관리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그 양이 많지 않고, 또한 스포츠선진국의 스포츠시설안전관리 사례를 조사한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몇몇 선진국에서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 뿐 비교·분석 자료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유관기관·민간기관의 공조 하에 스포츠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법적 마련, 전문가 인재 교육 및 육성, 안전 지표의 공식화, 민간 협회를 통한 스포츠안전 교육 활성화 등 스포츠 환경의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스포츠·레저 안전네트워크 구축, 스포츠·레저 안전을 위한 선진국형 관리 시스템, 스포츠레저 안전관리사 양성 등 스포츠 안전을 중심으로 한 양적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 현황을 볼 때 우선 스포츠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학술적 가치 그리고 현장 활용도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4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13]의 『미국 스포츠시설 위기관리 대처방안과 매뉴얼』, [14]의 『Sporting club guide to a safe workplace』, [15]의 『Sicherheitinspektion für Sportanlage im Freien』, [16]의 『Sicherheitmanagement für Sportanlage』 등 미국, 호주, 독일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담당기관이 발표한 스포츠시설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드맵, 시설현황 등 보고서나 문건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스포츠시설안전관리 체계수립을 위해 해외 선진국의 스포츠시설안전관리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축, 향후 국내 스포츠시설안전 네트워크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조사대상 및 내용

3개국 미국, 호주, 독일을 대상으로 최근 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현황을 조사한다. 각 국의 정부법 및 지자체법 등의 법·제도 내용, 담당 정부 기관 및 민간 기

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스포츠안전과 관련주체, 정부 지원 및 지자체 지원 등의 재정 지원 현황, 스포츠안전이라는 전문가 육성 및 안전관리 육성에 대한 인력 육성, 그리고 대상별 의무 교육 유무 및 학교·대학·직장 등 대상별 의무 교육 여부에 대한 교육의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스포츠시설 안전 관리와 운영 실태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그에 따른 제도 마련, 시스템 마련 및 기존 체계 연계구축, 인력 육성, 재정 지원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

2.2 조사도구

2.2.1 문헌조사

관련이론 검토 및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연구방향과 조사구성을 설정하였다. 우선, 정부 및 유관기관(민간 포함)이 발행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현지 전문가로부터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또한 활용하였다.

2.2.2 전문가 회의

국내 스포츠 안전관리 전문가(체육단체 및 협회, 스포츠산업, 대한레저스포츠회 등), 안전관리 전문가(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등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2.3 심층면접

심층면접 대상은 해외의 현지 교수, 관련 전문가(민간기관, 관련 협회 등), 관련전공 국내 교수이며 각국 스포츠안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방안을 위한 가시적 정책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자문을 얻었다.

2.3 분석방법

문헌조사, 해외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현황 조사, 전문가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각국의 현황에 대해 설명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미국

3.1.1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2개의 다른 연방 부서들과 기관들의 전체 혹은 부분을 단일의, 통합된 부서로 통합하면서 창설되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의 11일 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톰 리지(Tom Ridge)는 백악관에서 첫 번째 국토 안보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국토안보실은 테러와 미래 공격에 대하여 국가를 수호하고자하는 포괄적인 국가적 전략을 감독하고 조직화했다. 2002년 11월, 의회에 의한 국가안보법 통과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국토 안보 활동을 조직화하고 통합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독립적이며, 각료급 부서가 되었으며 2003년 3월 1일 그 문을 열었다[17].

2014년 4년 주기 국토 보안 검토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5가지 미션 구조를 재확인했다[18].

- 테러리즘 예방과 안전 강화
- 국경 보안과 관리
- 이민법 집행과 관리
- 사이버공간 보호와 안전
- 국가 준비 태세와 회복력 강화

이러한 미션들을 달성하는 것은 DHS 활동의 모든 영역과 수많은 국토 보안 파트너들과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걸쳐 노력의 통합을 요구한다[18].

위의 5가지 미션 이외의 중점 영역으로는 국가적, 경제적 보안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DHS의 성숙과 강화가 있다[19].

미국 국토안보부의 전략적 목표는 인식-예방-보호-대응-복구-서비스-조직우수성으로 구성된다[20].

3.1.2 국토 보안 대통령 훈령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s; HSPDs)

미국 정부의 목표는 전 국가 정부의 모든 수준이 국내 사건사고 관리에 대한 국가적인 접근을 사용하면서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능력을 갖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2개의 분리된 기능보다는 단일 및 통합된 기능으로서 오히려 위기관리와 사후대응관리를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단일적이고, 포괄적인 국가 사건사고 관리 시스템(NIMS)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국내 사건사고를 관리하는 미국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조지 부시 대통령

령에 의해 2003년 2월 28일에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HSPD) 5를 발령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은 예방, 준비, 대응, 테러리스트 공격의 회복, 중대한 자연재해 및 다른 비상사태를 포함한다. 그러한 시스템의 이행은 국가를 통해 모든 정부 수준이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시는 더욱더 정부 책임자들이 국가 사건사고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부서에 대해 감독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갖는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위의 HSPD-5가 국내 사건사고 관리에 대한 법령이라면, HSPD-8은 국가적 준비태세에 대한 법령이다. HSPD-8은 국가의 모든 위험 준비태세 목표를 요구하고 주와 지역 정부를 위해 연방 준비태세 지원의 승인된 전달에 대한 매커니즘을 설립하고 연방, 주 및 지역 기관의 준비태세 능력을 강화하는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위협받는 혹은 실제 국내 테러리스트 공격, 중요한 재해 및 다른 비상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준비태세 능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21].

3.1.3 국가 사건사고 관리 시스템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

2003년 2월 28일,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국가 사건사고 관리 시스템(NIMS)을 개발 및 관리하도록 지시한 국토 보안 대통령 훈령 5(HSPD-5)를 발령했다[22].

그 내용에 따르면, “NIMS는 생명과 자산의 손실을 줄이고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원인, 규모, 위치 혹은 복잡성에 상관없이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하며 대응하고 회복하며 그러한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 비정부조직, 민간 분야의 모든 수준의 부처와 기관들이 매끄럽게 일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NIMS는 국가 대응 구조(National Response Framework; NRF)와 상호 협력한다. NIMS는 사건사고 관리에 대한 템플릿을 제공하는 반면, NRF는 사건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수준의 정책에 대한 구조와 매커니즘을 제공한다.”[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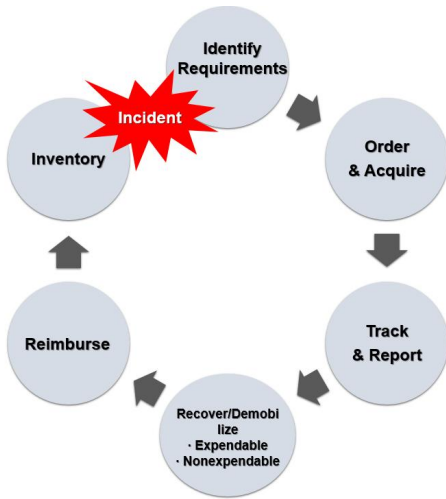
따라서 NIMS란

- 사건 사고 관리에 대한 포괄적이고 국가적인 접근이며,

- 원인, 규모, 장소, 복잡성에 상관없이 사건사고 관리에 대한 본보기이며,
- 모든 관할 수준과 전체 기능적인 원리에 걸쳐 적용 가능하다[23].

NIMS의 장점은 확장가능하고 유연한 사건사고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이며 대응자들 사이에 협동과 정보처리상호운용을 강화하며 포괄적인 모든 위험 준비태세 관할 구역 혹은 조직 사이에 효과적인 자원 조정 배운 모범 사례와 교훈을 반영한다는 것이다[23].

NIMS는 준비태세, 의사소통과 정보관리, 자원관리, 지속적 관리와 유지 등 총 5가지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 [24]. [Fig. 1]은 사건사고 발생 시 자원관리의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1] Resource management during an incident source: [22]

3.1.4 요약

국가가 운영하는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예측할 수 없어지고 있다. 국가적 준비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NRF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협력자들은 그들이 미래의 능력과 역량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넓은 수준의 전략적 영향들의 공유된 이해를 발전시키도록 북돋아진다. 전체 커뮤니티는 그 과정 내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조건을 모두 고려하면서 이러한 기틀 안에서 포함된 전략과 원칙을 조사하고 실행하는데 참여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러한 기틀이 살아있는 기록이고 존재하

며 새로운 정책들과 진화하는 상황과 그것의 사용으로부터 얻어진 경험과의 일치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 번째 검토는 기틀의 발표 이후 늦어도 18개월까지는 완료될 것이다. 그 후의 검토들은 4년마다 기틀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행될 것이다.

DHS는 NRF에 대한 검토와 유지 과정을 조정하고 감독할 것이다. 수정 과정은 역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서들을 개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틀을 위한 중요한 업데이트들은 연방의 고위 수준의 기관 검토 과정을 통해 심사될 것이다. 이러한 기틀은 다음을 성취하기 위해 검토될 것이다:

- 대응 목표와 목적에서 핵심 능력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함이다.
- 책임있는 기관의 조직을 적합하게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다른 4가지 미션 영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국가의 위협/위험 환경에서 변화에 기반을 둔 과정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함이다.
- 매일의 운영, 연습, 실제 사건사고와 경계 태세로부터 교훈과 효과적인 실행을 포함하기 위함이다.
- 국가의 우선순위와 지침, 중요한 임무 혹은 국가의 역량을 위한 전략적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응 미션 활동의 진전과 새로운 법, 행정 명령, 대통령 지시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틀의 실행과 검토는 적절한 새로운 과정과 기술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실행과 연습과 운영으로부터의 교훈을 고려할 것이다. 효과적인 실행은 연속성 계획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기틀에 포함된 역량이 위협 혹은 위협에 상관없이 실행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적절한 새로운 과정과 기술은 진화하는 위험 환경에 국가가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표준 기반 접근을 사용하는 모든 미션에 걸쳐 효과적인 통합을 허락하는 위치, 상황, 상호의존성과 관련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NRF 부록의 갱신은 기본 문서의 검토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된다.

미국의 안전과 회복력의 업무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국가가 10년 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강하고 더 나은 준비가 되는 동안,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올 수 십 년 동안 커다란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를 수호하는 책무는 확고히

남아있다. 미래의 육구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전체 커뮤니티를 데리고 옴으로써, 국가는 어떤 도전이 펼쳐지는 간에 직면할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도록 지속할 것이다 [25].

3.2 독일

3.2.1 법, 제도: 정부법, 지자체법 등

독일정부 협력기관인 민간 연구소 2hm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독일 스포츠시설의 수는 총 136,754개로 나타나고 있다[26]. 하지만 이 산출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8개의 카테고리만으로 분류되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독일 경제, 기술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스포츠 시설의 총 합계는 231,441개, 총 면적 366,795km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시설은 건축, 재보수, 관리, 운영되는 비용은 22,6 Mrd유로(Mrd=10억)이다.

독일 스포츠클럽의 수는 약 9만개 정도이고, 스포츠클럽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약 42%이다. 클럽회원의 약 2300만 명이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27]. 스포츠클럽의 설립은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와 주체육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은 스포츠시설종류에 따라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시설에서 건축, 보수, 관리, 운영되는 비용은 226억 유로(22,6Mrd)이다. 비용비율을 보면, 운영 및 유지비 97억 유로(9,7Mrd:43%), 인건비 56억 유로(5,6Mrd:25%), 건축투자비 70억 유로(7Mrd:31%), 시설 투자비 3억 유로(0,3Mrd:1%)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독일 전체 스포츠시설에서 운영 및 인건비가 약 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시설보수비용은 전체크기의 약 1%로 굉장히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독일올림픽체육회는 현재 시설보수비용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 420억 유로(42Mrd)로 보고 있고, 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이 영역에 더 많은 정부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장 최근 2012년에 실시된 “독일 스포츠시설의 경제적 의미와 미래의 스포츠시설 전망” 연구에 따르면, 독일 스포츠시설은 총 5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독일 자연경관 발전 및 건설 연구소 (Forschungsgesellschaft Landschaftsentwicklung und Landschaftsbau e.V.: FLL)에서 자연경관에 관련된 스포츠시설(예: 잔디구장, 골프장, 승마장 등)의 건설 및 관리

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많은 주에서 스포츠 시설의 관리지침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붕이 없는 스포츠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지침서(Richtlinie fuer Pflege und Nutzung von Sportanlagen im Freien)”에는 계획원칙에 따라 안전관리(Sicherheitsmanagement) 시스템을 크게 3단계로 보고 있다<Table 2>.

<Table 2> Safety management system of German research institute for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nature landscape (FLL)

Responsibility area	
Jurisdiction	Operator(mayor, director of the club, representative of private institution)
The field of responsibility	All responsible for the overall operation and safety management of the facility
Determination area	
Jurisdiction	Person in charge who received professional training
The field of responsibility	Creation of inspection plan and implementation of inspection
Practice area	
Jurisdiction	Public officer, technician, professional company which has sport facility evaluation and inspector, exercise instructor,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
The field of responsibility	Implementation of regular inspection

source: [28]

독일인구의 약 1/3은 스포츠클럽에 가입되어 있으며, 규칙적으로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스포츠(Schulsport)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취학 전 스포츠(Vorschulsport)도 속한다. 민법 제823조 상해보상법(Schadenersatzpflicht)에 의거하여 이런 조직에서 스포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고, 정기검사를 받은 스포츠시설에서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시설과 여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안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고, 정기적으로 최소 1년 마다 전문검사관에 따른 정기검사와 평가를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독일 스포츠안전에 적용되는 규정과 지침은 독일, 유럽 공업 규격위원회(DIN/EN-Normen), 독일 사고공보험(GUV), 기계 및 제품 안전법(Gerate- und Produktsicherheitsgesetz CPSG) 등 3개 기관에서 결정하고 있다.

3.2.2 스포츠안전과 관련 주체: 담당정부 기관 및 민간 기관의 역할 및 기능

주 내무부 장관 및 부서대표 위원회에서는 1991년 원활한 스포츠경기 운영 시 안전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관련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결정하였다. 특히 축구경기와 관련된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스포츠안전관리위원회(Nationaler Ausschuss Sport und Sicherheit: NASS)가 설립되었고, 1993년에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경기장규칙, 경기장 반입 금지조항, 경찰투입, 경기장안전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 안에서 축구팬 보호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년 간 이 위원회의 역할로 인해 안전에 관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현대적인 경기장 건축과 운영 시 안전기준 엄격히 강화
- 경기장 내에서 경찰과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전문화
- 사회교육학적 팬클럽 프로젝트를 통해 올바른 팬(Fan)문화 확산
- 집중적이고 전반적인 예방활동
- 폭력가담자에 있어 독일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장 금지사항으로 동의
- 전문적으로 훈련된 경찰 투입
- 지역단위, 국내단위 더 나아가 세계적인 단위로의 긴밀하고 향상된 협력

독일은 국내경기 시 안전향상을 위해 모든 주에 적용되는 경기장시설법령과 독일축구협회의 규정에 따라 경기장 건축기준과 인프라 시설 기준이 엄격하게 높다. 1부부터 4부에 해당하는 경기장은 경기장 운영 매뉴얼과 독일축구협회 규정비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구단은 매년 경기장에 관한 허가증명과 자격증명을 하여야 한다.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다:

- 외부, 내부 펜스, 계산창구, 입구, 티켓 확인하는 곳, 입구에서 검색하는 장비 설치, 경기장 비상문, 선수출입통로
- 교통시스템과 의무시스템
- 관중영역(팬클럽은 최대 2500명으로 제한, 그 구역은 일반석과 구분)
- 안전요원, 경찰, 의무인력의 공간 확보
- 응급조치함 배치, 화재보호기구 설치

- 기술적인 설치 (조명, 안전알람, 음향시설, 감시카메라, 표시판 등)

1부에서 4부까지의 구단은 안전책임자(Sicherheitsbeauftragte)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부, 2부는 정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부, 4부는 정직원을 선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경기장 안전에 관해서 일차적으로는 구단에서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다. 경찰은 안전책임자와 함께 안전한 경기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이다. 안전책임자는 구단의 모든 조치와 의사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모든 관객석에 출입이 가능하다. 독일축구협회 예방과 안전부서(Praevention und Sicherheit)의 직원과 긴밀한 협력을 갖고 있다.

경기장 안전은 일차적으로 경기주최측이 책임을 갖고 있다. 안전하고 원활한 경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구단은 안전요원대표와 안전요원(Ordnungsdienst)들을 투입시켜야 한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주최자의 운영규정에 따라 만들어지고,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안전요원의 투입은 안전 개념에 따라 결정이 되고, 경기 전, 후 투입된다. 안전요원들은 남자, 여자 모두 충분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상업법 제34조 a에 의거하여, 관객시설과 같이 특별히 안전이 요구되는 장소에서 안전업무담당은 경찰과 협의되어야 하고, 특별한 자격을 가진 인력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안전요원 선발조건으로는 18세 이상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책임감이 강하고,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있다.

경기에 투입되기 전에 기본과정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여기서 독일축구협회는 안전요원 기준을 더 발전시켰다. 응용과정 자격에서는 안전요원대표와 그 이외의 안전요원들과 사회적인 능력 특히 대화능력, 마찰상황 시 해결능력이 더 강화되었다. 안전요원은 매년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경찰이 이 교육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단은 민간 안전관리회사에서 안전요원들을 배치할 수도 있다. 이 때 직원의 개인능력과 신용, 안전업무능력의 질이 선발 시 특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안전요원 배치 시 과제, 법, 의무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축구 경기 시 현장에서의 복잡성은 확실하게 높아졌다. 따라서 새로운 네트워크파트너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졌고, 지난 몇 년 간 새로운 발전과 현상들이 크게 변

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유럽전역으로 관찰되었고, 각 담당자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여기서 도전을 만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전에 모든 영역의 네트워크파트너의 긴밀하고 신뢰가 가득한 협력은 핵심적인 성공요인이 된다.

3.2.3 인력육성: 스포츠안전 전문가

(Sicherheitsbeauftragte) 육성,

안전관리 요원(Ordnungsdienstler) 육성 등

독일축구협회(DFB)와 독일프로리그연맹(DFL)은 2010년에 안전을 위해 10가지 플랜을 정하여 규정으로 의결하였다. 그 중에 다른 것과는 달리 눈에 띄는 사항으로는 독일 프로리그인 1부에서 3부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을 육성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SRH사립대학교와 협력하여 안전책임자를 위한 연수과정을 설립하였다.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주대상자는 축구구단의 안전책임자와 안전과 관련된 인력이고, 연수목표는 더 복잡해지는 요구들과 더 잠재가능성이 있는 안전에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문적인 안전책임자들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 또한, 예방목적에 따른 계획안을 발전시켜서 본인이 속한 클럽에도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2011년 이후 25개 이상의 축구클럽과 분데스리가 1부에서 3부에 해당하는 구단에서 약 50명이상이 참가했으며, 모든 인원들이 성공적으로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 연수과정의 강사진은 이론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전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있으며, 건축가, 사고예방전문가, 행사기획가, 폭력예방전문가, 위기관리전문가 등이다. 총 연수기간은 8개월이고, 총 연수비용은 5200 유로로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한다.

연수과정의 내용은 크게 7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는 학습모듈과 1개는 시험모듈이다. E-Learning 시스템이 도입되어 수업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연습과 복습을 할 수 있다<Table 3>.

바이에른 레베쿠젠 구단의 경우, 바이시큐르 회사(BaySecur)로 사회사의 형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민간단체 안전관리 회사는 회사 내 연수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인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요원 교육의 기초는 축구와 같은 대형경기 운영 시 독일축구협회 규정 학습, 베스트팔렌 주 내부부

장관 “스포츠와 안전” 국가개념 학습, 경기장 시설법, 사담보호위주의 직업교육 등이 있다. 또한, 무기와 총기교육, 무기가 없을 시 호신술교육, 전반적인 경호학, 승차시 안전훈련, 응급조치교육, 고객서비스 교육 등이 있다.

<Table 3> Contents of training courses for safety management expert

Module	Content
1	The role, task,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safety manager
2	Specific safety analysis of club Methods of safety and risk management
3	Prevention(communication, conflict and friction management & discussion)
4	Safety management at legal level(Legal basis, issue of responsibility, etc)
5	Crisis management(emergency action)
6	Violence and aggression in soccer (cause, effect & prevention)
7	Summary, presentation of undergraduate subject of study & examination

source: [29]

3.3 호주

3.3.1 도입

이 안내서는 직장 건강 및 안전 규정(WHS Regulations)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검토(Emergency plan)의 준비, 시행 그리고 검증에 있어서 주요위험 시설들(MHFs)의 운영자에게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주요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는 시설에 맞는 구체적인 비상계획의 수립이다. 비상계획은 시설 안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적절한 훈련과 재원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의해서 정의된 절차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시설에서 관련활동의 특별한 계획과 절차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 문서화되어지고 준비되어야 한다.

MHF의 비상사태 계획은 직장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요한 사건들을 포함한 사건의 결과에 대한 규모(중요도)와 심각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의도되어진다. 따라서 계획은 시설의 불확실한 위험들(Hazard and risk)에 대해서 적절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비상사태 계획은 또한 재산과 환경에 대한 결과의 효과를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더 나아

가서, 비상사태는 위험한 화학물질과 관련되어질 수도 있지만 자연재해(홍수나 화재)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안내서는 시설들이 너무 많은 계획을 갖지 않을 것을 충고한다. 왜냐하면 단일 계획은 빠른 대응을 촉진하고 혼란을 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안내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야기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처럼 WHS Regulations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 안내서는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분된다:

- 시설에서 비상사태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기술하는 서론
- 시설에서 비상사태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할 주요원칙들에 대한 개요
- 비상사태 계획을 준비할 때 소개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슈들
- 모든 이슈들은 간단하고 명료한 포맷에서 설명되고 커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 비상사태 계획 안내서
- 계획을 검증하거나 훈련이나 교육을 제공하거나 적절할 때 계획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 계획의 운영

비상사태 계획들은 전체 비상사태 계획 틀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지역에 위험시설의 중심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역의 구체적인 계획들 또한 필요하다. 시설계획은 지역의 비상운영 위원회와 같은 관련법으로 명시된 비상운영 계획들과 조화를 이루거나 통합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비상 서비스 기관들은 사고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계획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 안내서 안에서 포함된 요소들에 초점을 두면서, 시설들은 잘 구조화되고 간결하고,

- 위험평가에서 확인된 주요한 위험과 시설에 구체적인
- 시설 안이나 밖에서 다른 비상사태이나 주요사고들의 결과를 소개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 시설 안전운영시스템과 통합된
- 노동자들, 비상서비스기관, 그리고 주요한 사고의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협의안에서 발전된
- 노동자들과 방문자들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들에 의해서 이해된

- 적절한 기간 안에서 검증되고 검토되고 업그레이드를 조건으로 한 비상사태 계획들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제공하는 광범위한 안내서에 추가해서, 여기에는 비상사태 계획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소개되어야 하는 관찰구역의 구체적인 요건들이 있을 수 있다. 운영자들은 그들 자신의 관찰구역의 관련 비상 서비스 기관들과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협의해야한다.

시설은 별도의 과정을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다른 문제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관련된 과정들을 가지는 것이 기대된다:

- 비상사태에 따른 업무 연속성
- 방호용장비의 설계와 공급
- 시설의 배치와 건물의 설계
- 토지이용 안전계획 이슈
- 환경 운영 시스템

이 안내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MHFs를 위한 일련의 지침 자료의 부분을 형성한다:

- 통지 및 결정
- 안전운영시스템
- 안전사례 개요의 개발
- 안전사례의 계획
- 안전사례: 안전운영 및 통제수단의 타당성 소개
- 시설의 직원 및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보, 훈련, 교육
- 지역사회에 정보 제공
- 안전평가

결정된 MHF의 운영자는 시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상사태 계획을 준비해야한다:

- 주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 건강이나 안전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소개해라.
- 스케줄 16에서 구체적인 모든 문제들을 포함해라.
- 비상사태 계획절차의 검증(검증빈도를 포함한)을 제공해라.

운영자는 시설에서 비상사태 계획에 대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비상사태 계획을 준비할 때 노동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WHS Regulations의 스케줄 16은 비상사태 계획안에 포함되어져야하는 문제들을 구체화한다.

3.3.2 비상사태 계획 원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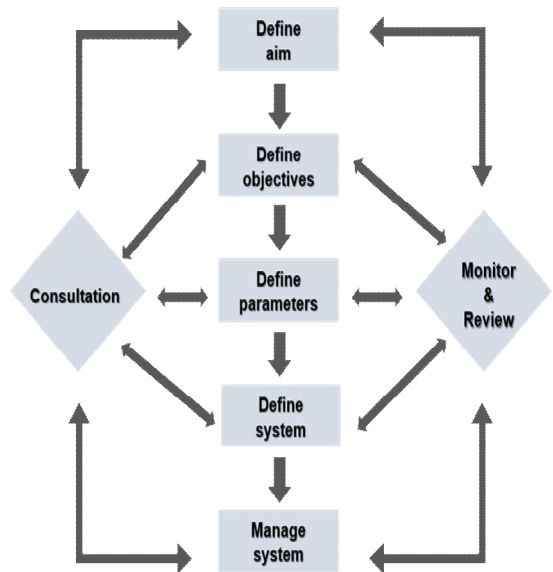
비상사태 계획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주요 조건은 적용되는 시설에 적합하게 재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커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계획의 사용자들이나 검토자들 모두를 위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명료하고 현실적이며 적절해야 한다. 덜 위험한 시설은 간단한 비상사태 계획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더 복잡한 시설은 더 자세하고 광범위한 계획이 요구된다.

비상사태 계획은 적절하게 시설안전운영시스템과 통합되어야 한다. 비상사태 계획의 모든 측면은 현실적이고 노동적합하고 관련단체들에 의해서 동의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요구되는 행동, 시기, 탐지방법의 효율성 그리고 결정과정에 관한 가정들을 포함한다. 비상사태 계획은 실제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반응하기에 이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실제 비상사태는 실제상황에서 이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3.3.3 비상사태 계획을 위한 준비

비상사태 계획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비상사태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사람, 재산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상사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그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상사태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의 범위는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심플하고 유연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포괄적이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 그리고 협의에 의해서 모든 이해집단과 시설의 욕구에 지속적으로 타당함을 확신시켜주면서 동시에 역동적이고 상호적이어야 한다. 비상사태 계획은 따라서 [Fig. 2]에서 제시된 것처럼 순환적인 과정이다. 모든 단계는 상호연관 되어져 있고 또한 자세한 계획들은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한편 [Fig. 3]은 적절한 비상사태 계획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비상사태 계획의 실제 기술은 사려 깊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Fig. 2] The emergency planning process source: [30], p.8.

이것은 목적, 목표, 계획의 구조가 명확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해결책은 현실적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한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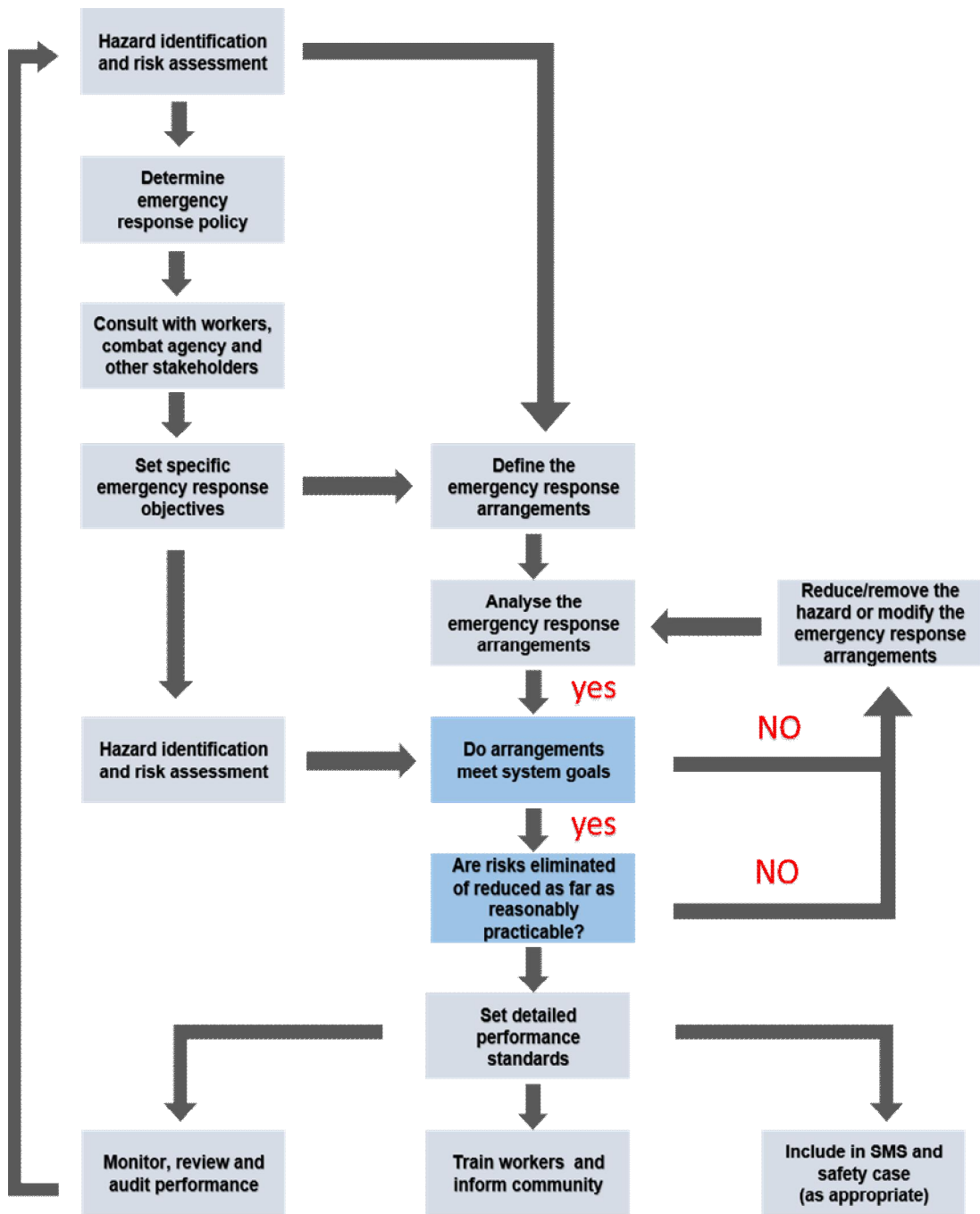
4. 결론

4.1 법제도 마련

우리나라의 현행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Table 4>와 같다.

현행 법령에서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 시설물 안전관리 법률과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르게 되어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또한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스포츠시설과 여가시설 운영자는 안전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전문위원회로부터 감독과 평가를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스포츠시설 안전을 위한 설치·운영·감독에 대한 상세한 법적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Fig. 3] Emergency plan preparation
 source: Safe Work Australia, "GUIDE FOR MAJOR HAZARD FACILITIES: EMERGENCY PLANS", Retrieved from www.safeworkaustralia.gov.au/sites/swa/about/publications/pages/mhfemergencyplans, 2012.[30], p.9.

<Table 4> Research findings upon legislations of sports facilities in Korea

Statute	Article
1.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facility	(Article 4) Management authority shall plan and conduct safety as well as maintenance manage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lan
	(Article 6) shall conduct safety inspection
	(Article 7) shall conduct precision safety diagnosis
2. Enforcement ordination of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facility	(Article 5) Safety maintenance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securement of personnel and equipment 2. action system in case of an emergency 3. preservation of the collection of design document 4. expenses on reinforcement plan and safety maintenance
3. Building act	(Article 49, Section 1) Facility shall be equipped with hallways, stairs, exits, evacuation facilities, fire hydrant, pathways connected to reservoir
	(Article 49, Section 2) shall prescribe provisions on fire partition, structure of toilets, stairs, exits, lighting, ventilation, moisture-proofing
4. Enforcement ordination of building act	(Article 23, Section 1) The owner or superintendent of the building shall conduct regular checks and spot checks
5. Guidelines for the evacuation and fire preventive construction	(Article 10, Section 1) The door from seats to the exit shall not be opened inward and at least more than 2 exits shall exist per stand
	(Article 10, Section 2) Valid width of each exit shall be over 1.5 meters.
6.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o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cording to the act o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Article 47, Section 2), the facility shall be equipped with the emergency equipment for CPR, and racetracks, motor racetracks or playgrounds which have more than 5,000 seats have an obligation to be furnished with the emergency equipment(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26-2, Section 2)
7.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guarantee of access for the disabled, the aged, and pregnant women	Sports facility shall provide valid width of passage, slope, parking lot, toilet, building entrance without height difference, etc, which are totally dedicated to the use of the disabled
8. The act on establishment and use of sport facilities	(Article 24, Section 1) Sport facility director shall place the safety personnel to help people use the facility safely and pleasantly
9.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establishment and use of sport facilities	(Article 23, Appendix 6) Common criteria, facility, equipment, maintenance of safety, disaster prevention, restriction upon drinkers, prohibition of exceeding capacity, installation of fire extinguisher, posting and notifying evacuation map

source: [31], p.32

4.2 행정체계(정부 및 민간) 구축

스포츠경기 및 시설의 안전기준 강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과 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스포츠시설 안전을 위해 민간단체를 창설하고 시설에 대한 평가, 검사, 점검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민간단체는 스포츠 협회 지침 및 규범을 준수하고 회원 연수교육, 전문가 양성 및 관리를 위한 교육, 안전관리 검사를 시행해야만 한다[32].

정부차원에서 스포츠경기 및 시설안전을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엄격한 스포츠시설 안전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4.3 전문 인적자원 개발

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포츠이벤트에서 관람객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배출해 낼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 마련이 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들 중에 하나이다[33].

미국의 경우, the National Center for Spectator Sports Safety and Security(NCS4)가 있어 훈련, 전문적 개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를 통해 스포츠 안전 및 보안의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NCS4는 프로스포츠 협회, 민간단체, 정부기관과 함께 프로스포츠리그, 스포츠이벤트 개최, 대학 및 고등학교 스포츠와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done with the sports promotion fund from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KISS-2015-B02002).

REFERENCES

- [1] Myung-Gon Kim, "A Study on the Safety Status of Sports Facilitie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Ph.D dissert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2006.
- [2] Un-Chang Yeo, "Non-payment item's Damage Relief on school safety accident is different from one another", Yonhap New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33623>, October 14, 2013.
- [3] Jae-Oak Yoon, "2014 Inspect of the government offices Major performance by lawmakers", pp. 179-181, 2014.
- [4]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Nationwide public sports facilities status", 2013.
- [5]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Inspect of the government offices", Press Material, 2014.
- [6]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act on establishment and use of sport facilities", 2015.
- [7] Hall, S. A., Shibli, S., & Schwarz, E, "Sport Facility Operations Management. Routledge", 2010.
- [8] National Construction Code, <http://www.abcb.gov.au/about-the-national-construction-code.aspx>
- [9] Civil law and public insurance company's regulation on sports facilities' safety inspection of Hessen state, Germany, <http://www.hss-sport.de/wartungen-und-inspektionen/>
- [10] Se-Jung Roh, "A Study on the Security Guard and Safety System of National Sports Events",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07.
- [11] Sang-keun Park, "A Study on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related to in-school facilities and their compensation system",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6.
- [12] Jin-Soo Han, "A Study on the Statu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 in Children's Sports Activities. - Centered on Metropolitan Indoor Public Sports Complex in Seoul",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2008.
- [13] Washington, T. S., "Neighborhood parks and physical activity levels", Ph.D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2010.
- [14]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Sporting clubs guide to a safe workplace", Retrieved from www.ausport.gov.au/_data/assets/pdf_file/0005/526064/33004_Workplace_Safety_Guide_web.pdf, 2013.
- [15] Katthage, J., "Sicherheitinspektion für Sportanlage im Freien", Intergreen Sicherheitsma, 2014.
- [16] Osnabrück, H., "Sicherheitmanagement für Sportanlage", GESCHÄFTSBEREICH WEITERBILDUNG, 2014.
- [17]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reation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trieved from www.dhs.gov/creation-department-homeland-security, 2015.
- [18]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iscal Years 2014-2018 Strategic Plan", Retrieved from 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FY14-18%20Strategic%20Plan.PDF, 2014.
- [19]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ummary of Performance and Financial Information", Retrieved from 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DHS-FY-2013-Summary-of-Performance-and-Financial-Information.pdf, 2013.
- [20]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Performance Budget Overview, Fiscal Year 2007", Retrieved from www.dhs.gov/publication/performance-budget-overview-fiscal-year-2007, 2007.
- [21]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Week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 Retrieved from www.training.fema.gov/emiweb/is/icsresource/assets/hspd-5.pdf, 2003.

[22]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Retrieved from www.fema.gov/media-library-data/20130726-1824-25045-1942/national_incident_management_system_2008.pdf, 2008.

[23]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 Overview", Retrieved from www.fema.gov/media-library-data/20130726-1853-25045-0014/nims_overview.pdf, 2011.

[24]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Retrieved from www.fema.gov/pdf/emergency/nims/NIMS_core.pdf, 2011.

[25]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ational Response Framework", Retrieved from http://www.fema.gov/media-library-data/20130726-1914-25045-1246/final_national_response_framework_20130501.pdf, 2013

[26] Bundesministerium fuer Wirtschaft und Technologie, "Wirtschaftsfaktor Sport in Deutschland - Die wirtschaftliche Bedeutung des Sportstaettenbaus und ihr Anteil an einem zukuenftigen Sportsatellitenkonto", 2012.

[27] BREUER, C. u. P. WICKER, "Sportvereine in Deutschland. Sportentwicklungsbericht - Analyse zur Situation der Sportvereine in Deutschland", Bundesinstitut für Sportwissenschaften Deutsche Sporthochschule Köln, 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 2010.

[28] Forschungsgesellschaft Landschaftsentwicklung Landschaftsbau.V.(FLL), "Empfehlung für die Pflege und Nutzung von Sportanlagen im Freien", Planungsgrundsätze. Bonn, 2006.

[29] SRH private university, <http://www.srh-hochschule-berlin.de/en/>(September 26, 2015)

[30] Safe Work Australia, "GUIDE FOR MAJOR HAZARD FACILITIES: EMERGENCY PLANS", Retrieved from www.safeworkaustralia.gov.au/sites/swa/about/publications/pages/mhfemergencyplans, 2012.

[31] Jong-Mi Joo, "Development of Safety Management Manual for Sport Event Facility",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Vol. 20, No. 5, pp. 29-44, 2015.

[32] Hye-Jung Choi, Soon-Gi Back, "A Study on Depressive disposition by Convergence approach of Leisure History and Family situation in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295-302, 2015.

[33] Dong-Won Kim, "Wheelchair tennis has ever fusion of classroom participation of the physically disabled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exercise emotional and exercise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5-23, 2015.

김 일 광(Kim, Il Gwang)



- 1998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사)
- 2000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체육석사)
- 2009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 경영
 · E-Mail : whyhow1023@gmail.com

권 혜 원(Kwon, Hei Won)



- 1992년 2월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학사)
- 1998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석사)
- 2010년 8월 : Cornell 대학교 경영학과(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동덕여자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일가정 양립 정책, 고용노사관계, 고진로 고물입
 인적자원관리 정책, 공정 인사관리
 · E-Mail : hkwon@dongduk.ac.kr

최 진 호(Choi, Jin Ho)



- 1998년 2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체육학과(학사)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석사)
- 2006년 5월 : Texas A&M 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교육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동덕여자대학교 부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조직행동, 스포츠 리더십, 스포츠 행정
- E-Mail : gocjh98@dongduk.ac.kr